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. 4. 1 선고 2014가단19048 판결

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전등기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5. 4. 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답 1,150m²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1. 6. 15. 접수 제195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2007. 7. 30.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송영복

별지